

3.1.21 대학평의위원회운영규정

제정 2007. 05. 29.
개정 2008. 03. 20.
개정 2018. 02. 07.
개정 2018. 11. 28.
개정 2020. 06. 23.
개정 2020. 11. 02.
개정 2021. 01. 26.
개정 2023. 07. 14.
개정 2024. 06. 03.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법인 초당학원 정관 제66조 내지 제70조의 3에 규정된 대학평의위원회(이하“평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 각각 자문에 한한다.

1. 대학의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칙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학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학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추천위원회의 위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조 직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평의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14인의 평의원으로 구성하며,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 정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28., 2023.07.14.>

1. 교원 - 5인
 2. 직원 - 4인 <개정 2023.07.14.>
 3. 조교 - 1인 <신설 2018.11.28>
 4. 학생 - 2인 <호 변경 2018.11.28>
 5. 동문 및 대학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 각 1인 <호 변경 2018.11.28.>
- ② 교원 및 직원 평의원은 각각의 구성단위를 대표할 수 있는 자로 2년 이상 근속한 재직자 중 대학의 주요 정책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20.06.23., 2023.07.14.>
- ③ 조교 평의원은 본교에 재직자 중 평의원 임기 만료일까지 평의원으로 활동 가능한 자로 한다. <신설 2018.11.28.><개정 2020.06.23.>

- ④ 학생 평의원은 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한다. <호 변경 2018.11.28., 2024.06.03.>
- ⑤ 동문 평의원은 초당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로 대학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자로 한다. <신설 2020.06.23.>
- ⑥ 대학발전 평의원은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로 한다. <신설 2020.06.23.>
- ⑦ 평의원회 구성에 있어서 제1항의 각 구성단위 중 한 단위에 속하는 평의원의 수가 평의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특정 성별이 의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23.>
<개정 2023.07.14.>

제4조(추천 및 위촉방법) 각 구성단위의 평의원은 다음 각 항에 의하여 특정 성별이 의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천된 자 중 구성단위별 평의원 정원을 총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06.23., 2023.07.14.>

- ① 교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교수회의에서 1인 1인씩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득표율에 따라 상위 10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06.23., 2023.07.14.>
- ② 직원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직원회의에서 1인 1인씩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득표율에 따라 상위 8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06.23., 2023.07.14.>
- ③ 조교를 대표하는 평의원은 전체 조교회의에서 1인 1인씩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하여 득표율에 따라 상위 2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06.23., 2023.07.14.>
- ④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3학년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총학생회 또는 기타 학생을 대표하는 조직에서 4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06.23., 2023.07.14.>
- ⑤ 동문을 대표하는 평의원은 초당대학교 학부 또는 대학원 졸업자 중 총동문회에서 2인을 추천한다. <개정 2020.06.23., 2023.07.14.>
- ⑥ 대학발전 평의원은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또는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로 학과 또는 부서에서 추천한다. <개정 2020.06.23.>
- ⑦ 삭제<2020.06.23.>
- ⑧ 삭제<2020.06.23.>
- ⑨ 삭제<2020.06.23.>

제5조(임원) ① 평의원회에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둔다.

- ② 의장과 부의장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되, 그 임기는 평의원 임기와 같다. 의장의 경우 학생이 아닌 평의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6.23.>
- ③ 의장은 평의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하고,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유고시 이를 대리한다.

제6조(임기) ①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학생을 대표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당 해년도 12월말까지로 한다.

-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③ 총장은 평의원 임기만료 30일 전까지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 자에게 서면으로 평의원 추천을 의뢰해야 하며, 각 구성단위는 추천을 의뢰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평의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 ④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각 구성단위의 추천권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총장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성단위별 결원만큼을 위촉한다. 이때 결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7.14.>

1. 구성단위별 결원의원과 함께 의원으로 추천되었던 자 중 위촉
 2. 구성단위별 결원의원과 동일한 성별로서 2배수로 신규 추천된 자들 중에서 위촉
- 〈전 호 신설 2023.07.14.〉

제3장 회 의

제7조(회의) ① 평의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개정 2018.11.28〉

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1. 총장의 요청이 있을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③ 의장은 회의개최 7일 전 E-mail, SNS, 유선통화, 서면 또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일정 및 목적을 사전 공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06.23., 2021.01.26.〉

④ 삭제 〈2020.06.23.〉

제7조의2(자료요청) 평의원회는 규정 제2조의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11.02.〉

제8조(의사 정족수 등) 평의원회의 회의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 의한다. 〈개정 2023.07.14.〉

제9조(회의결과 등) 〈개정 2018.02.07〉

① 의장은 평의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07〉

② 평의원회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보존하고 회의종결 후 10 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2년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 의결로 회의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2.07., 2021.01.26.〉

제10조(비밀유지) 평의원회 의원 및 관계 교직원이 평의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 ① 총장은 평의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평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평의원 등에게는 회의비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평의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20.11.02.〉

② 제1항의 간사는 기획연구처 직원으로 한다.〈개정 2020.11.02.〉

③ 간사는 평의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0.11.02.〉

제4장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위원회

- 제13조(개방이사 및 개방감사 추천위원회 구성) ① 법인정관 제20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이사 및 개방감사의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대학평의회에 둔다.
- ② 추천위원회의 정수는 5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각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 하는 자 2인 <호 변경 2024.06.03.>
 2. 대학평의회에서 추천 하는 자 2인
 3.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1인
- ③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 의결을 통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14조 삭제 <2023.07.14.>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정 이외에 평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은 평의회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개정 2018.02.07., 2023.07.14.>

제16조(준용) 이 규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및 법인 정관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28.>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7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제4조 제1항의 교수평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교수회에 의뢰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8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①제7조(회의) 제1항의 정기회의는 2019년 1월 1일부터 분기별 1회 개최한다.
② 학부모 평의원은 시행일 이전 위촉된 외부인사 평의원의 임기만료 후 위촉한다.
③ 시행일 이후 위촉된 조교 평의원의 임기는 제6대 대학평의원의 잔여임기까지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0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1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중 결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4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의원 구성이 완성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6월 03일부터 시행한다.